

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및 연기기간 등에 관한 기준안

사유번호	연기사유	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	연기기간	비고
1	질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※ 산재 관련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 -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신청서 - 요양연기기타신청서(의료 기관에서 확인한 진료 소견 내용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진단서 제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기간이 표기된 경우 : 치료기간까지 - 치료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: 장기치료 및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▪ 산재 관련 서류 제출시 : 첨부 서류의 명시된 기간까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유 발생시 마다</p> <p>※ 당뇨병, 고혈압 등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동일 질병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3회까지만 인정</p>
2	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영 확인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병적증명서) - 산업/전문요원복무 확인서(산업기능요원/전문연구요원 복무 기록표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류 제출시 : 복무기간 	
3	가. 해외출장 나.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·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해외출장 및 연수 확인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출장 : 출·입국 사실증명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또는 여권,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(출장명령서, 인사발령문 등) - 연수 : 입학허가서(한국어 번역공증 첨부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: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▪ 해당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: 제출서류 발행일(여권의 경우 출국일)로부터 6개월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유 발생시 마다</p>

사유번호	연기사유	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	연기기간	비고
4	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(교정기관, 구치감호소 등)	▪ 입증 서류	▪ 서류 제출시 :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	사유 발생시 마다
5	가. 출산 나. 육아	▪ 출산 또는 육아에 관한 사실 입증 서류 - 출산 :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(출산예정일 명시) 등 - 육아 : 육아휴직 확인서 등 *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02호서식]	▪ 출산 확인 서류 제출시 : 출산예정일까지 ▪ 육아 확인 서류 제출시 : 휴직기간까지 *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9조	사유 발생시 마다
6	결혼	▪ 청첩장 등	▪ 서류 제출시 : 결혼일로부터 7일	사유 발생시 마다
7	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	▪ 사망진단서 등	▪ 서류 제출시 : 사망일로부터 2개월	사유 발생시 마다
8	교육 인프라 부족	▪ 산림청의 지침 문서 또는 협의 결과 문서	▪ 산림청의 지침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	

※ 비고

1.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이수 기한 내에 상기 사유번호 1.부터 8.까지의 사유에 따른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「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에 관한 세부사항」 <별지 제1호서식>의 교육·훈련 연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2.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연기는 「산림기술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·훈련에 한함
3. 산림기술자가 질병, 입대, 해외출장 및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·훈련을 미리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, 「산림기술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제3호 다목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함